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0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기존의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안전운행기준 등을 심의해왔으나, “시내버스” 정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위원의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바,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설치 규정에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및 제1조의2)
- 나.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사항에 마을버스 요금조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 다.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중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8.~6. 28.)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교통정책실 버스정책과 한복근(☎2133-2268)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내버스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 정책”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책”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시내버스정책”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정책”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사항”을 “시내버스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보조금”을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시민”을 “시내버스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이해당사자간”을 “시내버스 이해당사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 중 “노선체계”를 “시내버스 노선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버스관련”을 각각 “시내버스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마을버스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버스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마을버스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에 따른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 시내버스개혁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시내버스 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책</u>----- ----- ----- ----- -----.</p>
<p>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u> 시내버스 정책</u>에 관하여 심의하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실 소속하에 <u> 버스정책시민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조의2(위원회의 설치) <u>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책</u>----- ----- ----- ----- -----.</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 서울특별시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u> 사항</u>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u> 위원회</u>----- ----- ----- <u> 시내버스 정책</u>----- ----- -----.</p>
<p>1. 2. (생략)</p> <p>3. <u> 보조금</u>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5. <u> 시민</u>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p>	<p>1. 2. (현행과 같음)</p> <p>3. <u> 시내버스 보조금</u> ----- -----</p> <p>4. (현행과 같음)</p> <p>5. <u> 시내버스 시민</u> ----- -----</p>

현행	개정안
6. <u>이해당사자간</u>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6. <u>시내버스 이해당사자간</u> ----- -----
7. <u>노선체계</u>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u>시내버스 노선체계</u> ----- ---
8. 차고지 및 승차대 등 <u>버스관련</u> 시설에 관한 사항	8. ----- <u>시내버스</u> <u>관련</u>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u>버스관련</u>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	10. <u>시내버스 관련</u> -----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p><u><신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마을버스</u> 정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u>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u></p> <p>2. <u>마을버스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u></p> <p>3. <u>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u></p> <p>4. <u>마을버스 안전운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u></p> <p>5. 그 밖에 <u>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u></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한복근(☎ 2133-2268)